

# 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심택홀딩스(이하 “당사”)는 주식회사 시니어파트너즈, 주식회사 성진사와 2020년 11월 5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## 1. 합병 회사

가. 존속회사 : 주식회사 심택홀딩스,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(송정동)

나. 소멸회사 : 주식회사 시니어파트너즈,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경로후영4길 50  
주식회사 성진사,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-7

2. 합병 방법 : 당사가 (주)시니어파트너즈 및 (주)성진사를 흡수합병 함.

## 3. 합병 비율

당사는 (주)시니어파트너즈 및 (주)성진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으로 존속회사인 당사와 각 소멸회사에 합병 비율은 모두 1:0 으로 함.

4. 합병기일 : 2021년 1월 5일

## 5. 소규모합병

당사와 (주)시니어파트너즈 및 (주)성진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여 진행함.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: 2020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.

나. 제출기간: 2020년 11월 19일 ~ 12월 3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(특별계좌)

- 2020년 12월 3일까지 당사 경영전략팀에 제출. (043-269-9792)

2) 실질주주(일반계좌)

- 2020년 11월 30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.

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과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
7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8. 상법 제527조의3 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			
㈜심텍홀딩스 대표이사 귀하			
본인은 ㈜심텍홀딩스와 ㈜시니어파트너즈, ㈜성진사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			
주 주 번 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			2020년    월    일
성명 :	주민등록번호 :		
주소 :			

2020년 11월 19일

주식회사 심텍홀딩스 대표이사 박광준